

충청북도 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 보고

1996. 12.

교육 사회 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 교육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6년 11월 12일

◦ 회부일자 : 1996년 11월 12일

다. 상정일자 : 1996년 12월 18일

제132회 충청북도 정기회 제7차 교육 사회 위원회 상정이결

2. 제안 설명 요지

(충등 교육국장 송대현)

가. 제안 이유

충북 북부 지역인 제천에 학생들의 교양증진, 정서순화, 여가 선용을 위한 종합문화시설인 제천 학생회관이 설치됨에 따라 충청북도 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명 중 "충청북도 학생회관"을 "충청북도립 학생회관"으로 변경함.

◦ 현행 충청북도 학생회관 이외에 제천 학생회관을 설치함에 따라 학생회관의 명칭 및 위치를 별표로 규정함.

◦ 회관의 운영 중 "체육 활동의 공간 제공"을 추가함.

◦ 학생회관의 관장 "지방 서기관"을 "지방 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복수 직화 함.

◦ 총무과의 하부 조직에 "사무계, 관리계"를 두는 것을 삭제함.

- 운영과의 분장업무중 "전시실, 토의실, 음악실, 청담실, 회의실, 시애실운영"을 "전시실, 특별활동실, 회의실, 수영장, 로울리스케이트장운영"으로 변경함.
- 학생회관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정기휴관일 지정을 삭제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관장이 정하도록 하며,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사전에 예고한 다음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를 "회관 시설의 수리, 정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는 임시 휴관일은 관장이 정한다"로 개정함.
- 학생회관 시설 사용료의 민동요인이 생길때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회관의 시설 및 설비 등 사용료 기준 별표2를 삭제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관장이 정한다"로 개정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영만)

충청북도 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바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의 변경 및 회관운영 사항의 추가에 대해서는 시안의 변경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나

조례안 제11조 2항 규정에 있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사전예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져야 할 것이며

조례안 제14조 제1항중 "단수직"을 "복수직"으로 개정하려 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2항 규정에 의해 당초 교육부에 제출한 안에 대한 교육부의 승인사항에 의하거나
동법 제42조 2항 규정에 미루어 볼때 "장학관"을 보하여 복수직화 하려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16조(사용료)를 「회관의 시설 및 설비 등의 사용에 관한 사용료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관장이 정한다」로 개정하려함에 대해서는 주민의 부담에 관한것 이기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질의 1]

조례안 제4조(관장) 규정에 있어서 "지방서기관"을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 이유는

[답변]

- 종합문화시설로 교육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프로그램 운영등 전문직의 필요성과 열린사회의 능동적인 대처등 교육행정의 능률성을 기함
- 일선교사들의 여망에 대한 부응과 교육행정의 능률성을 위해서는 복수직화가 필요하다고 봄

[질의 2]

직제승인 및 보직에 대한 "장학관"의 임명 사항은

[답변]

- 보직을 주는 장학관은 국가발령이고 일반장학관은 교육감이 발령
- 복수직화 할 경우에는 "장학관"에 대한 정원배정은 교육부와 총무처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5. 토론표지

교육청측의 의견을 듣고, 소수 의견은 있었으나 토의를 거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견을 종합

6. 심사결과 : 원안기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개정조례안 : 별첨

9.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